

경북체육공로장 수여규정

제정 2016. 4. 1

경상북도 승인 2016. 4. 27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체육인으로서 향토체육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“경북체육공로장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여의 원칙) ①경북체육공로장(이하 “공로장”이라 한다)은 경북체육 최고의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“공로장”이며, 체육인으로서 향토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공로장의 수여시기는 생존시와 사망시에 규정 제4조, 제5조, 제6조에 의거 제7조 결정으로 수시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(중복 수여금지) 동일인에 대해서는 본 공로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공로장 추천대상)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공로장 추천대상이 될 수 있다.

①본회 민선 회장을 역임한 자

②평생을 경북체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자

③종목단체와 시·군체육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여 본도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
④본회 임원 및 사무처 직원으로서 30년이상 역임한 자와 본회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무중에 사망한 자

제5조(공로장 추천) ①규정 제4조의 해당자로서 공로장의 추천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추천한다.

②공로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공적 심사를 수여일 30일전까지(생존시 수여) 거쳐야 하며, 사망시의 수여는 규정 제6조에 의하여 따로 심의한다.

제6조(심의) ①공로장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의는 “스포츠공정위원회”에서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공로장 수여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확정) 공로장 수여대상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취소와 환수) ①공로장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로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취소와 환수한다.

1. 공적조서상의 기재사실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
2. 향토체육에 심대한 누를 끼친 자
3.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장을 취소와 환수하려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9조(공로장 수여) 공로장은 회장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로 친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임부회장 혹은 부회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.

제10조(제식 및 규격) ①경북체육공로장의 제식 및 규격은 “별표 1” 과 같다.

②재료는 순금 75그램(20돈)으로 한다.

제11조(기금적립) 경북체육공로장 수여기금은 매년 일정액을 본회예산에 편성하여 적립할 수 있으며, 적립된 기금에서 본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.

다만, 기금적립은 본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.

제12조(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) 공로장을 받을 자가 사망하거나,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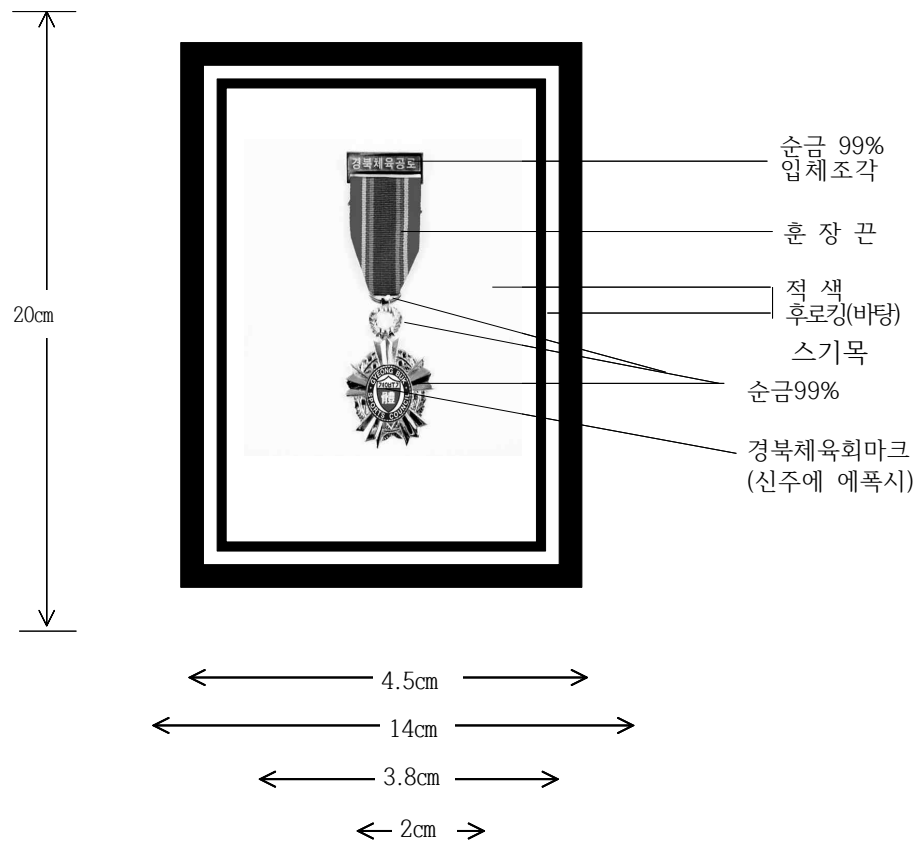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전에 수여한 공로장은 이 규정에 의해 수여한 것으로 한다.

【별표 1】

경북체육공로장 (제식 및 규격)



- 금은 20돈으로 하고 모양은 금형을 만들어 제공한다.
- 액자는 고급나무에 알미늄 이중액자, 바탕은 적색 후로킹으로 처리하여 메달이 선명하게 나오게 한다.
- 액자는 세울 수 있게 다리를 부착한다.
- 메달을 사용할 수 있게 분리가 용이하게 만든다.